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용현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1.04.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나. 군인사법에 의거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부사의 장 직위가 2018.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부대창설 및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직위 개정 소요가 반영되지 않을 것을 보완하기 위함.

다. 시행령에 명시된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중 공군에서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를 구분하여 보직하던 것을 통합하고, 정보병과를 추가함으로써 공군 전투병과 장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 사유 반영(안 제15조의3 제3항)

- 1)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3항에서 장성급 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로 정함.

나. 중요부서의 장 직위 보완(안 제13조제1항)

- 1) 임무중요도 및 정원조정을 고려하여 드론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1호(전투임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2호(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에 추가하고, 육군인사사령관과 국방부군사보좌관을 중요부서의 장 직위에서 제외함.

다. 공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출신병과’ 개선(안 제14조제1항)

- 1) 제3호에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의 가용직위를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
- 2) 제3호의 전투병과를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으로 한 것에 추가로 정보병과를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편성 필요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 25. 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사령관”을 “드론작전사령관,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사이버작전사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육군인사사령관, 육군군수사령관”을 “육군군수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군: 조종과·항공통제과·방공포병과·정보과

제14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① ----- ----- ----- ----- ----- ----- -----.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1. ----- -----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u>육군항공사령관</u> ,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가. ----- ----- ----- ----- <u>드론작전사령관</u> , <u>육군항공사령관</u> ----- ----- ----- -----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2. ----- -----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
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
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부 군사보좌관

나. (생략)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
군사관학교장, 육군인사사
령관,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마. (생략)

② (생략)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
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
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1.·2. (생략)

3. 공군

가. 미사일방어부대 외의 부
대: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
과

가. -----

- 사이버작전사령관

나. (현행과 같음)

다. -----

----- 육군군수사

령관 -----

라.·마.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

1.·2. (현행과 같음)

3. 공군: 조종과·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정보과

<u>나. 미사일방어부대: 방공포</u> <u>병과</u> ② (생 략)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5